## 2019학년도 3기 방과후수업 초과 시수(안)

안건 번호

제안년월일 : 2019.10.08.

제 안 자:학교장

제안설명자 : 교육연구부장

## 1. 제안사유

3기 방과후수업 시수가 담당 수업 시수 기준 30% 이내를 초과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주문형태의 수업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며,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인정됨

## 2. 근거

현직교원의 경우 정규수업,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주당 수업 시수로 과도한 프로그램을 담당해서는 안 됨

-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시수는 정규수업 담당시수의 30% 이내 (방학기간은 담당수업시수의 1.3배 이내)로 참여 권장
- \*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현직교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및 교무업무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별도 안건으로 **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운영**

- 2019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13쪽(서울시교육청 배부) -

## 3. 담당 시수 초과 방과후수업 내용 및 사유

교사명	담당 시수	방과후 수업 초과 내용 및 사유				
		대상	시간	강좌명	장소	기타
우 상 구	14시간 (부장 교사)	1, 2학년	월,수 1교시	입시체육 준비반	대주관	주문형강좌
		1, 2학년	화,목 1교시	입시체육 준비반	대주관	주문형강좌
		1, 2학년	토 1,2,3교시	축구 전술 전략 및 실전 게임반	운동장	주문형강좌
		* 1주 7시간(14시간 기준 2.8시간 초과)				
		* 체육계열 진학 희망 학생 주문형 수업 운영으로 불가피하며, 업무 처리에				
		지장 없음 인정				